

장애인차별금지법 검토의견

건설교통부 도시교통팀 이상주 사무관

○ 제13조 세부조항 검토

빈부격차·차별시정위원회 조정안	건교부 의견	사유
①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(이하 도로 및 보도와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합쳐 “교통수단 등”이라 한다)을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, 이를 위해 교통약자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(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며,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	① 장애인은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조 제2호,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, 여객시설 및 도로(이하 도로 및 보도와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합쳐 “교통수단 등”이라 한다)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, 이를 위해 교통약자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(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며,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	○ ‘보도’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도로’로 대체 ○ ‘교통주관기관’ 및 ‘운송사업주’는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교통행정기관’ 및 ‘교통사업자’로 대체
②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, 이를 위해 교통주관기관은 운전면허시험의 신청, 응시,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	-	○ 경찰청 소관
③ 교통주관기관 및 운송사업주는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보조건의 동승을 거부하거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의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	-	○ 복지부 소관

④ <u>장애인은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개조한 차량의 이용과 보행을 통한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고, 이를 위해 교통행정기관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조한 차량 및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하여야 한다.</u>	삭제	○ 자동차 장치 중 안전과 관련이 적은 부분은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장착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- 운전 장치의 개발, 연구, 생산 지원 및 구입에 대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에 대하여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26조 3호에 의해 장애인 또는 고령자의 자가운전에 필요한 운전장치 또는 차량의 개발에 대한 의무가 있으므로 삭제 ○ 교통약자법 제16조(특별교통수단)에서 장애인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명문화하였고 동시행규칙에서는 인구 규모별 도시의 의무 도입대수를 규정하고 있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으므로 삭제
⑤ 교통주관기관은 운송사업주가 장애인에 대해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않도록 홍보, 교육, 지원, 감독하여야 한다.	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해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않도록 홍보, 교육, 지원, 감독하여야 한다.	

○ 제12조 세부조항 검토

장차법(안)	건교부 의견	사유
① 시설주관기관 및 시설주는 장애인 아닌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건축물, 시설 및 교통시설을 장애인등이 접근하고 이용함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,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	① 시설주관기관 및 시설주는 시설을 장애인등이 접근하고 이용함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,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	○ '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건축물'은 그 대상범위가 너무 넓으므로 삭제 ○ '교통시설'은 제13조에서 규정 가능하므로 삭제
② 시설주관기관 및 시설주는 장애인이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피난·대피시설을 마련하지 않거나 피난 및 대피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.	-	○ 복지부 소관
③ 시설주관기관 및 시설주는 장애인 보조건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의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	-	○ 복지부 소관
④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가 장애인등에게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홍보, 교육, 지원, 감독하여야 한다.	-	○ 복지부 소관